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의 주요 조항에 대한 연구*

김 상 만**

-
- I. 서 론
 - II. 대금지급보증서의 특징
 - III. 대금지급보증서의 주요 조항 분석
 - IV. 결 론
-

주제어 : 대금지급보증서, 지급보증, 독립적 은행보증, 독립보증, 이행성보증, 청구보증, 보증신용장

I. 서 론

국제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간 물품, 용역, 지적재산권, 자본 등의 거래이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무역상무학회 하계학술세미나 발표한 내용을 개고한 것임.

**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를 필요로 한다. 국제거래에서 수출자¹⁾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이행성보증서(performance type guarantee)가 이용되며,²⁾ 수입자³⁾ (buyer(매수인), employer(발주자·도급인), owner(발주자·도급인), purchaser(구매자) 등)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과 더불어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플랜트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선박수출은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입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담보장치로 대금지급보증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⁴⁾, 이러한 거래가 구매자신용(buyer credit)⁵⁾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차주(통상 수입자)의 대출금에 상환에 담보로 대금지급보증서가 이용된다. 대금지급보증서의 양식은 각 거래별로 다양한데, 비교적 짧고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금지급보증서도 있고,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한 대금지급보증서도 있다. 소액의 물품이나 용역의 수출거래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대금지급보증서가 사용되고, 거액의 해외

-
- 1) 각 계약의 유형별로 seller(매도인-매매계약·플랜트수출계약에서), contractor(수주자·시공사·수급인-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supplier(공급자-플랜트수출계약에서), builder(건설자-선박수출계약에서)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상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수출자'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수출자'는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seller, contractor, supplier, builder 등을 포함한다.
 - 2) Roeland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2.; Roy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510, 1995, p.9.; 김상만,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2002, p.13.; 김상만,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집 제1호, 2013, p.143.
 - 3) 각 계약의 유형별로 buyer(매수인-매매계약·선박수출계약·플랜트수출계약에서), employer(발주자·도급인-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owner(발주자·도급인-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purchaser(구매자-플랜트수출계약에서)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본 연구는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상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수입자'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수입자'는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buyer, employer, owner, purchaser 등을 포함한다.
 - 4) 김상만,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238.
 - 5) 구매자신용에서는 수입자에게 금융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수입자가 대출계약상 차주가 된다.(Malcolm Stephens, *The Changing Role of Export Credit Agencies*, IMF Washington, 1999, p.73; Richard Willsher, *Export Finance*, Macmillan Press 1995, p.66; Kim, Sang Man, "A Comparative Study on a Supplier Credit and a Buyer Credi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Good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 48, 2010, p.138)

건설공사나 플랜트수출거래, 대출계약에 사용되는 보증서의 내용은 상세하고 방대하다. 대금지급보증서는 단순히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금융조달에 대한 담보기능도 하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대금지급보증서는 국제거래에서 유용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⁶⁾ 대금지급보증서가 국제거래를 발전시키는 담보장치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보증서가 공정하고 합당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금지급보증서 주요 조항에 대하여 국제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금지급보증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금지급보증서의 주요 조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도모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항마다 실제 국제거래에서 사용된 대금지급보증서의 문안을 예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정하고 합당한 대금지급보증서가 사용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논문으로는 석광현의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2002)’⁷⁾가 있는데, 이 논문의 제2장에서 회사보증의 주요 조항에 대해 기술하고, 제3장에서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을 비교하고, 제4장에서는 Comfort Letter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실제 사용된 대금지급보증서(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보증서 포함)를 각 조항별로 해당 예시문구의 제시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판례연구를 통하여 대금지급보증서의 법적성질을 도출하였고, 화환신용장 및 이행성보증서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국제거래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국제거래에서 사용된 대금지급보증서 30여개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5개의 대금지급보증서⁸⁾를 각 조항에 예시하여 각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채진익, “은행보증제도에서 지급청구와 그 이행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6권제1호, 2011, p.218.

7)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p.7-36.

8) 1)통신설비수출계약 관련 수입국정부의 대금지급보증서 2)물품수출계약 관련 정부의 수입국 대금지급보증서 3)대출계약 관련 모기업의 대금지급보증서 4)대출계약 관련 정부의 대금지급보증서 5)대출계약 관련 은행의 대금지급보증서

II. 대금지급보증서의 특징

1. 대금지급보증서의 법적성질

(1) 일종의 독립적 은행보증

국제거래에서 이용되는 독립적 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이란, 주채무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청구를 하면, 보증은행은 기본계약(underlying transaction)과는 별개로 보증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이다.⁹⁾ 독립적 은행보증은 ‘독립보증’, ‘은행보증’, ‘청구보증¹⁰⁾’, ‘독립적 보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¹¹⁾ 대법원에서는 유원건설 사건¹²⁾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을 사용하였다.¹³⁾ 독립적 은행보증과 동등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9) Carole Murray, *Schmitth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1th ed., London Steven & Sons, 2010, p.245.; 김상만,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2002, p.16.

10) 허해관,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지급”, 무역상무연구 제51권, 2011, p.213-214.

11) Georges Affaki,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CC, 2011, p.1.

12)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13)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은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신용장에 대응하는 ‘보증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URDG 758”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구보증통일규칙”으로 번역하여 공식번역본을 출간하였기 때문에 “청구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아래의 사유로 용어의 통일 또는 일률적인 번역 보다는 각 용어에 대응되는 국문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예 : independent bank guarantee → 독립적 은행보증, independent guarantee → 독립보증, demand guarantee → 청구보증, standby letter of credit → 보증신용장, performance guarantee → (계약)이행보증 등).

첫째, 국내에서는 통상 법적구속력이 없는 “Comfort Letter”을 “보증장”으로 옮기고 있어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영문계약해설, 2006, 760면.) 이 용어는 “Comfort Letter”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보증장”을 다시 영어로 옮길 때, 어느 영문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청구보증통일규칙 제2조에서는 “demand guarantee or guarantee”는 그 명칭과 관계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of credit)을 사용하고 있으며¹⁴⁾,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¹⁵⁾, 실무에서는 보증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은 차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¹⁶⁾ 한편, 기능면에서 보증신용장은 독립적 은행보증과 동일하지만,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의 구조와 형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¹⁷⁾, 독립적 은행보증서도 SWIFT¹⁸⁾를 통해 개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의 차이는 없게 되며, 구조와 형식은 법적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은 주로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지만, 수입자의 대금지급(또는 차주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도 이용되는데¹⁹⁾, 전자를 ‘이행성보증’²⁰⁾, 후자를 ‘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한다.²¹⁾ 한편,

넷째, UNCITRAL에서 1995년에 제정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은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 번역이 적절한 것 같으며, 이를 “청구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또는 “보증장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번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서는 제목에서는 “independent guarantee”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2조제1항의 정의에서는 “undertaking”라는 넓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14) Roeland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1, p.7.

15) Roy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510, 1995, p.16.; 김선국, “보증신용장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24.

16) 박세운·한기문·김상만·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08, p.12.

17) Georges Affaki, *op. cit.*, p.10.

18) SWIFT의 매뉴얼을 보면, 화환신용장은 MT 700으로 개설되고, 보증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은 모두 MT 760에 의해 발행된다.

19) Carole Murray, *op. cit.*, p.245.

20) 해외건설에서 사용된 보증서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부른 바 있으며(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국내건설에서 사용된 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사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또는 “이행보증계약”이라고 부른 바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22778 판결)(김상만,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집 제1호, 2013, p.147.)

21) 김상만, *국제거래법*, 두남, 2011, p.337.; 김상만,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독립적 은행보증은 비금전채무(non-financial obligation)에 대한 담보 또는 금전채무(financial obligation)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의 지급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이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적 은행보증서가 갖는 법적 성질을 갖는다.

(2) 독립·추성성

대금지급보증서는 기본계약(수출계약, 대출계약)과는 독립적이다.²²⁾(통상 보증서에 이를 명시한다.) 대금지급보증서의 발행은 기본계약을 원인으로 하지만, 수익자의 지급청구는 전적으로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²³⁾ 이에 따라 보증서는 기본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증인은 기본계약상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성은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각 보증서에서 정한 지급청구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²⁴⁾ 예를 들어 지급청구의 조건이 '절대적 청구(on first demand)'로 기재된 경우 수익자는 어떠한 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기본계약상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²⁵⁾ 그러나 지급청구의 조건으로 주채무자의 계약위반을 확인하는 법원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은 훼손된다.²⁶⁾

통상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단순서면지급청구를 요구하지만, 기타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정당화하는 서류(다시 말해, 주채무자의 계약위반을 확인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계약불이행과는 관계 없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집 제1호, 2013, p.147.

22) 대법원에서도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23) Roeland Bertrams, *op. cit.*, p.11.

24) *Ibid.*

25) '절대적 청구(on first demand)'가 가능한 보증서를 '절대적 청구보증(first demand guarantee)'라고 부른다(Roeland Bertrams, *op. cit.*, p.11.).

26) Roeland Bertrams, *op. cit.*, p.1, p.11.

이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가 보증서의 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²⁷⁾ 일반보증(surety)에서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보증인이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지만,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그 보증서 상 요구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²⁸⁾

(3) 주채무성, 절대적 지급 등

보증인은 주채무자로서 대금지급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절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²⁹⁾, 일반보증에서와 같이 보증성이 없다. 그리고 보증서의 조건과 일치하면, 보증인은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조건성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항변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³⁰⁾, 그리고 주채무자에게 먼저 모든 구제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¹⁾ 이로 인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primary obligor)가 되는데, 이는 보증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일반보증에서의 보증인의 항변권 및 보증인의 면책주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통상 보증서에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과 보증인이 주채무자임을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보증서의 문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4) 보증의뢰인(수입자)과 보증인과의 법률관계

보증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행하므로 보증의뢰인(즉 주채무자)과 보증인과의 법률관계는 위임이라고 볼 수 있다.³³⁾ 보증인이 지급을

27) 김상만,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2002, p.26.

28)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2008, p.66-67.

29) Carole Murray, *op. cit.*, p.245.

30) Matti S. Kurkela, *Letters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2nd ed, Oxford Press, 2008, p.18.

31) Philip Wood,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London Sweet & Maxwell, 1990, p.303.

32) Ibid.

33)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김상만,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하거나 지급청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인은 즉각적으로 보증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 점에서 보증인은 일반적인 보험자와는 다르다.³⁴⁾ 지급보증서의 발행의뢰를 받으면, 보증인은 보증의뢰인의 상환능력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게 되는 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의 프로젝트 컴퍼니 또는 선박수출거래에서 단선회사의 경우처럼 보증의뢰인의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모기업의 상환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³⁵⁾

2. 대금지급보증서와 화환신용장의 비교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은 수입자의 신용을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며³⁶⁾, 대금지급보증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인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바, 이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³⁷⁾ 또한, 독립성과 추상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³⁸⁾, 당사자자치의 원칙 및 엄격일치의 원칙³⁹⁾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사기의 예외(fraud exception)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통적이다.⁴⁰⁾ 그러나 다음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화환신용장에서는 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신용장과

신인류, 2002, p.72.

34) Roeland Bertrams, *op. cit.*, p.13.

35) Stephenson Harwood, *Shipping Finance*, 3rd Ed., Euromoney Institution Investor Plc, 2006, p.17.

36) 채진익, “URDG 하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요건과 그 일치성 기준”, 무역상무연구, 제 50권, 2011, p.113.

37) Matti S. Kurkela, *op. cit.*, p.14.

38) Georges Affaki, *op. cit.*, p.10.

39) IE Contractors Ltd v Lloyds Bank Plc.(1989) 사건(2 Lloyd's Rep. 205)에서 법원은 '신용장에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증서에서의 지급청구는 보증서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항소심(2 Lloyd's Rep. 496(1990))에서는 '엄격일치의 원칙은 보증서의 해석 및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Carole Murray, *op. cit.*, p.246.).

40) Carole Murray, *op. cit.*, p.246.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통상 화환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상기의 서류가 요구되지 않고, 단순서면지급청구서만 요구된다.

둘째, 화환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 외에 지정은행이 있으며, 지정내용에 따라 위 지정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한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통상 지정은행이 없다. 다만, 보증서가 SWIFT로 개설되는 경우 이를 통지하는 은행은 있다.

셋째, 화환신용장은 통상 물품매매거래에서 이용되며, 대금지급보증서는 통상 플랜트수출, 해외건설공사, 선박수출거래에서 이용된다.

넷째, 화환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물품의 가치와 동일한 선하증권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며, 수입자가 물품인수를 거절하거나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을 통해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보증인은 선하증권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담보장치를 징구해야 한다.

다섯째, 화환신용장에서는 별도의 예외 없이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정한 결제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주채무자에게 파산, 지급불능상태 등 이행을 곤란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수익자는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은 본래 예정되었던 지급기일 보다 조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섯째, 화환신용장에 적용되는 국제적 통일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이며, 모든 신용장이 이를 따른다고 명시한다. 대금지급보증서에 적용가능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758),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 98),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1995); “유엔협약”)⁴¹⁾,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RCG 325) 등 다수가 있지만, 신용장통일규칙에 비해 그 이용도가 현저히 낮다. 이에 따라 준거법이 중요하며, 대금지급보증서에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41) 1995.12.11.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0.1.1.부터 발효되었다. 2012.5월 현재 계약국은 총 8개국(에쿠아도르, 파나마, 엘살바도르, 쿠웨이트, 튀니지, 벨라루스, 가봉, 라이베리아)이며, 미국은 1997.11월 서명을 하였으나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payments/1995Convention_guarantees_status.html, 2013.4.20자 검색

한편, 수출자의 입장에서 대금지급보증서(화환신용장과 비교하여)의 장점을 살펴보면,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제시해야 하는 서류가 단순하므로 서류의 하자를 사유로 대금지급이 거절될 위험이 낮다. 이에 비해 신용장에서는 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수종에 이르며, 통상 개설 은행은 엄격하게 서류심사를 하여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는 경우 결제(honour)하지 않는다. 화환신용장의 제시를 조사한 결과, 1/2에서 2/3 정도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서류하자가 있고, 1/2 이상은 서류하자로 지급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⁴²⁾, 화환신용장의 담보력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⁴³⁾ 한편, 단점을 살펴보면, 화환신용장에서는 네고(negotiation) 또는 포페이팅(forfaiting)이 가능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기일전에 매입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네고가 용이하지 않다.⁴⁴⁾

3. 대금지급보증서와 이행정보증서의 비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행정보증서와 대금지급보증서는 모두 독립적인 행보증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다음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이행정보증과 대금지급보증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구조면에서는 서로 반대이다. 이행정보증에서는 수출자가 보증의뢰인이 되고, 수입자가 수익자가 되며, 통상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보증은행이 된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수입자가 보증의뢰인이 되고, 수출자가 수익자가 되며, 통상 수

42) Ralph H. Folsom, Michael Wallace Gordon, John A. Spanogl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8th Ed, West Group, 2009. p.138.

43) 서류하자가 있다고 하여 항상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하자주장을 포기할 것인지 문의하는데, 통상 90% 이상은 개설의뢰인은 하자를 포기하며, 이 경우 개설은행은 서류를 인수하고 결제한다.(Ralph H. Folsom, Michael Wallace Gordon, John A. Spanogl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8th Ed, West Group, 2009. p.139).

44) 화환신용장은 UCP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UCP에서는 네고(negotiation)에 관해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네고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는 UCP의 적용을 받지 않아 네고에 친숙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보증서의 양도를 통하여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이는 화환신용장에서의 네고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가 약하다.

입자의 거래은행(또는 모기업)이 보증인이 된다.

둘째, 이행성보증에서는 수출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여야 지급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에서는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여야 지급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행성보증서에서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금지급보증서에서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이행했으나,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행성보증에서 수익자가 얻는 이익은 기본계약상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다. 기본계약상에서의 수익자의 이익은 물품을 인도받는 것인데, 이행성보증을 통해 얻는 이익은 금전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에서 수익자가 얻는 이익은 기본계약상의 이익과 동일하다. 기본계약에서 수익자가 얻는 이익은 금전(대금)이며, 대금지급보증서를 통해서 얻는 이익도 이와 동일한 금전이다.

III. 대금지급보증서의 주요 조항 분석

1. 표제(Title)

통상 대금지급보증서의 맨 상단에 대금지급보증서를 나타내는 표제(title)를 기재한다. 표제로는 'Letter of Guarantee'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Guarantee', 'Payment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등이 사용된다. 한편, 위 문구는 이행성보증서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표제만으로 이행성보증서 또는 대금지급보증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금지급보증서에서의 표제는 어음이나 수표와는 달리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니며, 이점에서 화환신용장과 유사하다.⁴⁵⁾ 다만, 그 문서가 대금지급보증서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증서라는 표제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UCP 600 제2조에서도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 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URDG 758 제2조에서도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은 그 명칭에 상관 없이 일치하는 지급제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는 서명확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시)

Letter of Guarantee, Guarantee, Payment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2. 발행일과 보증서 번호

통상 보증서 표제 다음에 발행일자와 보증서 번호를 기재한다. 보증서상 효력발생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발행일은 대금지급보증서의 효력이 개시되는 시점으로 본다.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에 발행일과는 별도로 효력발생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날짜가 효력발생일이 되며, 보증서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있는 경우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시점에 보증서의 효력이 발생된다.⁴⁶⁾

보증서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신(letter) 형식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서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보증서의 진정성 확인, 식별, 기타 관리의 편의성 면에서는 보증서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SWIFT로 개설되는 경우⁴⁷⁾ '20 Transaction Reference Number(TRN)' 다음에 보증서번호를 기재한다.⁴⁸⁾

3. 수익자

수익자(beneficiary)는 대금지급보증서에 의해 지급청구권이 있는 자이다. 수

46) URDG 758 제4조에서도 수익자는 보증서가 발행되는 시점부터 또는 보증서에서 발행일 이후의 시점 또는 사건발생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발행일 이후의 그 시점 또는 사건발생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7) 화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대금지급보증서도 SWIFT로 발행될 수 있다. 통상 금융기관이 SWIFT를 이용하여 신용장개설, 보증신용장개설, 보증서발행을 하지만, 일반기업도 SWIFT에 가입하여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보증서나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MT 760으로 발행된다(화환신용장은 MT 700으로 개설).

48) MT 760 : Guarantee / Standby Letter of Credit

27 : Sequence of Total

1/2

20 :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TRN)

M4555812ZZ00064

익자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이며, 대금지급보증서상의 권리자이다. 수익자는, 무역거래에서의 매도인(seller), 해외건설공사에서의 시공사(contractor), 선박수출에서의 선박건조자(ship shipbuilder)가 된다. 한편, 해외건설, 플랜트수출, 또는 선박수출이 구매자신용방식(buyer credit)으로 진행되는 경우 차주(수입자)가 대주은행에 보증서를 제공하며 이 경우 대주은행(lender)이 수익자가 된다.⁴⁹⁾ 수익자의 동일성을 확정하기 위해 완전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보증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수출계약을 이행하여 수입자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되고 수입자의 대금지급(또는 지급불능)이 있어야 한다.

4. 지급보증인

지급보증인(guarantor)은 대금지급보증서의 채무자이다. 보증인의 동일성을 확정하기 위해 완전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신에 의한 대금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기관의 명칭, 서명, 서명자의 직성명(title and name)도 기재한다. 대금지급보증서도 일반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SWIFT로 개설될 수 있다. SWIFT로 개설되는 경우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통지은행이 되는데, 이는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의 보증인과는 달리 지급책임은 없으며⁵⁰⁾, 화환신용장의 통지은행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보증인은 수입자(또는 차주)의 의뢰에 의해 보증서를 발행한다. 지급보증인은 매수인(또는 차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익자의 지급청구에 의거 지급을 하면, 매수인(또는 차주)에게 동대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국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모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대금지급보증서가 요구되며, 공공발주의 경우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이 되기도 한다.⁵¹⁾ 특히 연불방식의

49) 구매자신용에서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차주인 수입자와 대주인 금융기관이며, 모기업이 지급보증하거나 직접 차주가 되기도 한다(김상만,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51).

50)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서는 수출국 소재의 은행(구상보증인: counter guarantor)이 수입국 소재의 은행(보증인 : guarantor) 앞으로 구상보증서를 발행하고, 이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수입국 소재의 은행이 수익자앞으로 보증서(guarantee)를 발급한다. 한편, 역보증에서 구상보증인을 제1 지시은행(first instructing bank), 보증인을 제2 개설은행(second issuing ban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oeland Bertrams, op. cit., p.19.).

선박수출에서 수입자가 단선회사(one-ship company)인 경우 통상 모기업(선주사)의 대금지급보증서가 요구된다.⁵²⁾

5. 약인(Consideration)

대금지급보증서 발행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수출계약, 대출계약 등)을 약인(consideration)으로 하여 대금지급보증서가 발행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대금지급보증서는 독립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기본계약을 근거로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약인을 요구하지 않지만⁵³⁾,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의 요건으로 약인을 요구하며, 약인이 없는 계약은 집행불능(unenforceable)인 것으로 본다.⁵⁴⁾ 수출계약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의 경우 수출계약을 명시하고, 대출계약에서 차주의 상황에 대한 보증에서는 대주(lender)와 차주(borrower)간에 체결된 대출계약을 명시한다. 이 경우 수출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기본계약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국제적 통일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보다는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뉴욕주법이나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경우 약인조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1) 김상만,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238.

52) Stephenson Harwood, *op. cit.*, p.17.

53) Philip Wood, *op. cit.*, p.299.

54) 16세기 말경 보통법원은 상대방의 약속(promise)과 교환된 약속에 대해서만 집행을 인정하였고, 17세기 초에 보통법원에서는 약속에 대한 교환된 대가의 의미로 ‘약인(conside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E. Allan Farnsworth · Willaim F. Young · Carol Sanger, *Contracts(Cases and Materials)*, 6th ed., Foundation Press, 2001, p. 24-25.)

예시 1) (수출계약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for Supply of DTS Switching System No. XXXX (the "Contract"), dated [일자], between XXX Telecom Company.(the "Buyer") and XXX Corporation (the "Seller"), we, the Ministry of Finance of [수입국], as primary obligor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payment to you of the following sums payable by the Buyer to the Seller.

예시 2) (수출계약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In consideration of your delivering (수출목적물) to [수입자명] having its principal place at [주소] ("Purchaser"), on a deferred payment basis under the purchase and sale agreement dated [일자] ("Agreement") entered into by and between you and Purchaser, the Undersigned,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bsolute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full, prompt and punctual payment when due.

예시 3) (구매자신용방식의 수출계약에서 수입자의 대출금상환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In connection with the Loan Agreement dated [일자] (the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차주(수입자)] (the "Borrower") and XXX Bank as the Lender (the "Lender"), we, [보증인] (the "Guarantor"), as primary obligor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payment to you of the following sums payable by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예시 4) (구매자신용방식의 수출계약에서 수입자의 대출금상환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WHEREAS

Pursuant to the Master Credit Agreement dated [일자] and its Amendments n° 1, n° 2 and n° 3 respectively signed on XXX, XXX, XXX (together "the Agreement") between 차주(수입자) as Borrower and XXX Bank(주간사은행) as Arranger and XXX Bank acting through its Seoul Branch as Lender, the Lender has agreed to make available to the Borrower,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 facility amounting to USD [금액] in principal.

Any Admission Form under the Agreement is inter alia subject to the delivery to the Lender of a Guarantee from P 국가 (the "Guarantor") (hereinafter the "Guarantee") in favour of the Lender.

The Guarantor having read the Agreement and the Admission Form n° 2 hereby issues such Guarantee in the following terms.

The Guarantor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to pay to the Lender any sum up to maximum amount of [금액]

예시 5) (구매자신용방식의 수출계약에서 수입자의 대출금상환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Whereas AAA Bank has entered into a loan agreement dated [일자] (the "Loan Agreement") with (amongst other parties) CCC Limited of Clarendon House, Bermuda (the "BORROWER"), a copy of which is attached to this Guarantee.

6. 대금지급보증서의 성격(절대적, 무조건적, 취소불가능 등)

보증인의 지급책임은 단순한 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이며, 절대적(absolutely)이며, 무조건적(unconditionally)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아울러 취소불가능(irrevocably)하다는 것도 명시한다. 대금지급보증서의 성격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그 명칭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고, 이 조항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지급보증서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보증서의 효력은 해당 준거법에 의해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일반보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절대적,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서상 지급청구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증서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의 내용에 따라 대금지급보증서의 담보력이 결정되는 바, 그 조건이 합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예시 1)

we, the Ministry of Finance of [수입국], as primary obligor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payment to you of the following sums payable by the Buyer to the Seller.

예시 2)

the undersigned,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bsolute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the full, prompt and punctual payment when due

예시 3)

we, [보증인] (the "Guarantor"), as primary obligor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payment to you of the following sums payable by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예시 4)

The Guarantor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to pay to the Lender any sum up to a maximum amount of USD [금액] to be increased by all interests, interests on late payments, and treasury costs upon receipt by the Guarantor of a first demand in writing from the Lender and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Lender stating the amount to be paid by the Guarantor.

예시 5)

The Guarantor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to pay to the Lender any sum up to maximum amount of [금액]

예시 6)

We [list all guarantor banks] (each a "Guarantor") each hereby unconditionally and irrevocably severally guarantees, each as for its own debt, the due and punctual repayment to yourselves of the percentage listed in Schedule 1

7.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보증인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증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기본계약(특정 수출계약, 특정 대출계약 등)을 특정하면서 그 기본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기재할 수도 있다. 보증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원금, 이자, 연체이자, 이자계산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이러한 금액은 기본계약상의 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이행성보증의 경우 기본계약상의 채무내용과 대금지급보증내용이 상이⁵⁵⁾하여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며, 이행성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은 일종의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아야 한다. 영미법에서는 위약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민법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8조).⁵⁶⁾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11436 판결,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21932 판결).

55) 이행성보증에서 기본계약상 채무인의 채무는 물품인도 등이지만, 이행성보증서의 내용은 금전을 지급하는 금전채무로 그 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행성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56)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LD조항)의 유효성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7권, 2002, p.74.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에서는 주채무자(수입자 또는 차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대금지급(즉 금전채무)이며, 보증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대금지급(즉 금전채무)로 그 성격이 동일한다. 따라서 대금지급보증서에서의 보증금액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점에서 이행보증과는 차이가 있다.

예시 1)

we, the Ministry of Finance of [국가명],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payment to you of the following sums payable by the Buyer to the Seller under the promissory note (the "Promissory Note") issu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

(A) The principal sum of Ten Million Seven Hundred Fifty One Thousand Eight hundred Twenty One U.S. Dollars (US\$10,751,821) to be paid in nine (9) installments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Promissory Note.

(B) The interest on the principal sum at the rate of four point five percent (4.5%) per annum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and a year of 360 days ; and

(C) The default interest on the unpaid principal sum or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twelve percent (12%) per annum from the due date of full payment thereof.

we, [보증인] (the "Guarantor"),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payment to you of the following sums payable by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A) The principal of the loan (the "Loan") up to [] U.S. Dollars (US\$ []) which shall be repaid in sixteen (16) consecutive semi-annual installments;

(B) The interest on the Loan at the rate of five percent (5.0%) per annum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and a year of 360 days; and

(C) The default interest on the unpaid Loan and interest at the rate of seven percent (7.0 %) per annum from the due date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ereof; and

(D) Any other amounts payable by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예시 2)

the undersigned guarantees the full, prompt and punctual payment when due(whether

at stated maturity, by acceleration or otherwise) by Purchaser of a series the (10) promissory notes("Note") to be issued by Purchaser to your order pursuant to the Agreement, respectively numbered "XXX 1" to "XXX 10", inclusive, the aggregate principal amount of which is U.S. Dollars [] (US\$ []),

and also guarantees the due and punctual payment by the Purchaser of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f the Notes, the first such payment of interest to be due and payable six (6) months after the Last Shipment Date of the Commodities and subsequent payments to be made at intervals of six (6) months thereafter at the rate of zero point seven five (0.75) plus six (6) month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 per annum until maturity (by acceleration or otherwise) and thereafter at the rate of fifteen percent (15%) per annum until full payment.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f the Not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year of 360 days and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예시 3)

we, [] (the "Guarantor"),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 the payment to you of the following sums payable by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A) The principal of the loan (the "Loan") up to [] U.S. Dollars (US\$ []) which shall be repaid in [] ([]) consecutive semi-annual installments;

(B) The interest on the Loan at the rate of [] percent ([]%) per annum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and a year of 360 days; and

(C) The default interest on the unpaid Loan and interest at the rate of [] percent ([]%) per annum from the due date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ereof; and

(D) Any other amounts payable by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예시 4)

The Guarantor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to pay to the Lender any sum up to a maximum amount of USD [금액] to be increased by all interests, interests on late payments, and treasury costs upon receipt by the Guarantor of a first demand in writing from the Lender and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Lender stating the amount to be paid by the Guarantor.

예시 5)

We [list all guarantor banks] (each a "Guarantor") each hereby unconditionally and irrevocably severally guarantees, each as for its own debt, the due and punctual

repayment to yourselves of the percentage listed in Schedule 1 against its name of the principal amount advanced by AAA Bank to the BORROWER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Loan") together with interest on the amount of the Loan hereby guaranteed by it at the rate of 3.93 (Three point nine three) per cent. per annum.

Each Guarantor shall pay interest to AAA Bank on any amount hereby guaranteed by it from the due date for payment under the Loan Agreement until it is actually paid hereunder at the rate of the LIBOR (as defined in the Loan Agreement) plus [0.75 per cent.] for successive periods of any duration up to 6 months which AAA Bank may agree with the Agent.

8. 지급청구사유

수입자가 대금결제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주가 대출금의 상환 기일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는 보증인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다. 지급청구 시 필요한 요건은 각 보증서별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지급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로 강한 독립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바, 전형적인 보증서에서는 단순한 서면지급청구만 요구된다. 그러나 강한 독립성으로 인한 사기적 또는 권리남용적인 청구는 대금지급보증서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금지급보증서는 사실상 일반적 보증이 되어 강한 담보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바, 이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URDG 758에서는 지급청구 시 보증서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또한, 개설의뢰인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제15조제a항), 유엔협약에서도 지급청구 시 보증서에서 요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제39조).

보증서에서는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시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급시한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경우, URDG 758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시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제a항), 유엔협약에서는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제1항).

예시 1)

In the event that the Buyer fails to pay any sum guaranteed hereby when due(whether at its stated maturity, by acceleration or otherwise), we shall, forthwith upon your written demand, pay the sum demanded to your designated bank account as set out in such demand. Such demand shall be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um is due and payable.

예시 2)

In the event that Purchaser fails to pay any amount of principal or interest on any Note on the maturity date or upon acceleration on the Notes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the undersigned will pay to you or any assignees hereof the outstanding principal amount of the Notes which are then payable and interest(including default interest for the period from the due date to and including the date of actual payment of the full amount demanded by you or any such assignee) accrued thereon as aforesaid within five (5) days after receipt by us of written demand from you or any such assignee including a statement that the Purchaser is in default of payment of the amount claimed in respect of the said Notes and/or interest thereon, without requesting you to take any or further procedure or step against Purchaser or with respect to the Notes and/or interest in default ; provided, however, that no demand hereunder may be made after the date which is sixty (60) days after the maturity date of the last maturing Note.

예시 3)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pay any sum guaranteed hereby when due (whether at its stated maturity, by acceleration or otherwise), the Guarantor shall, forthwith upon your written demand, pay the sum demanded to your designated bank account as set out in such demand. Such demand shall be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um is due and payable.

예시 4)

The Guarantor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to pay to the Lender any sum up to a maximum amount of USD 24,103,518.61 to be increased by all interests, interests on late payments, and treasury costs upon receipt by the Guarantor of a first demand in writing from the Lender and the written statement of the Lender stating the amount to be paid by the Guarantor.

예시 5)

This Guarantee shall be payable on demand made in writing to the Agent at the address set out in Schedule 2 and each Guarantor undertakes to pay to AAA Bank, through the Agent, within 180 business days after its demand, any amount hereby guaranteed by it which is not paid by the BORROWER when payable.

9. 유효기간 : 효력발생일, 보증종료일

일반적으로 보증서상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유효기간이라 함은 보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보증서상 별도로 효력발생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URDG 758 및 유엔협약에서는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URDG 758 또는 유엔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서상 보증서 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하거나 기타 효력발생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증서상 발행일과 별도로 효력발생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효력발생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증서의 효력이 발생된다(URDG 758 제4조 참조).

보증종료일(유효기간 종료일)은 대금지급보증서와 이행성보증서에 차이가 있다. 이행성보증서에서는 보증종료일을 특정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금지급보증서에서는 보증종료일을 특정일자로 정하지 않고 통상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로 정한다. 그 이유는 대금지급보증에서의 주채무는 실질적으로 금전채무이며, 대금지급보증도 금전채무로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엔협약(제35조)에서는 보증종료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유효기일의 종료일을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정하였는데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보증서발행일로 6년이 경과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시1)

This Guarantee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from the date hereof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hereby shall be paid in full by the Buyer or by us.

57) URDG 758 Article 4

c. The beneficiary may present a demand from the time of issue of the guarantee or such later time or event as the guarantee provides.

유엔협약 Article 7

(3) From the time of issuance of an undertaking, a demand for paymen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dertaking, unless the undertaking stipulates a different time.

예시 2)

This letter of Guarantee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upon its issue and shall continue in force and effect until sixty (60) days after the maturity date of the last Note in the said series or until the full payment of the said the (10) Notes and interest thereon whichever occurs first.

예시 3)

This Guarantee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from the date hereof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hereby shall be paid in full by the Borrower or by the Guarantor.

예시 4)

This Guarant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ull force until the Lender has been paid in full all amounts owed by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and Admission Form N° 2 and in case of Nov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22 of the Agreement.

예시 5)

This Guarantee is valid until the Loan together with interest thereon and all other amounts payable by the Guarantors hereunder have been paid in full.

10. 지급청구시한

지급청구시한에 관련된 문제는 ①보증기간(보증서의 유효기간)을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로 정한 경우와 ②보증기간을 특정기간(또는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통상 대금지급보증서는 이 방식을 취함)에는 지급청구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며, 소멸시효의 문제만 대두될 것이다. 그런데, 보증금액에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지급청구지연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증가되어 보증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통상 이행성보증서는 이 방식을 취함) 지급청구사유(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면 되는 것인지, 지급청구사유 및 지급청구(이 경우에도 보증기간 내 지급청구가 보증인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인지) 모두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다툼이

된다. 일반보증에서 보증기간의 의미는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며, 지급청구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⁵⁸⁾ 따라서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가 발생하면 수익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적용된다)⁵⁹⁾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서상 지급시한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⁰⁾

예시 1)

This Guarantee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from the date hereof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hereby shall be paid in full by the Borrower or by the Guarantor.

예시 2)

This Guarantee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from the date hereof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hereby shall be paid in full by the Borrower or by us.

예시 3)

This Guarantee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from the date hereof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hereby shall be paid in full by the Borrower.

예시 4)

This Guarantee is valid until the Loan together with interest thereon and all other amounts payable by the Guarantors hereunder have been paid in full.

예시 5)

This letter of Guarantee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upon its issue and shall continue in force and effect until sixty (60) days after the maturity date of the last Note in the said series or until the full payment of the said the (10) Notes and interest thereon whichever occurs first.

5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59)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9권, 2008, p.79.

60) 김상만,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집 제1호, 2013, p.161.

11. 비용, 수수료, 제세공과금의 공제

대금지급보증서를 통해 수익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주채무자로 부터 받는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공제된다. 그리고 원천징수 등도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보증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시 1)

All payments to be made by the Guarantor hereunder shall be free from any deduction or withholding, and if any deduction or withholding is required, the Guarantor shall additionally pay the amount deducted or withheld so that you receive the full amount of such demand if no such deduction or withholding had been made.

예시 2)

Payments by the undersigned under this Letter of Guarantee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telegraphic transfer to the account nominated by you in favor of you or your assignee without deduction, withholding or set-off of any kind.

예시 3)

All payments to be made by the Guarantor hereunder shall be free from any deduction or withholding, and if any deduction or withholding is required, the Guarantor shall additionally pay the amount deducted or withheld so that you receive the full amount of such demand if no such deduction or withholding had been made.

예시 4)

Any and all payments made by the Guarantor hereunder shall be made free and clear of all taxes and duties and without deduction or withholding for or on account of any taxes or duties levied in the Philipp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Agreement.

The Guarantor shall pay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for the preparation, execution, performance modification, amendment and enforcement of this Guaran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Agreement.

예시 5)

the Guarantor concerned shall compensate AAA Bank for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therewith calculated in the manner set out in clause 8.12 of the Loan Agreement. Bu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any payment made from the proceeds of enforcement of any of the security (including any guarantee) given by the Borrower or any other person for the Loan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Loan Agreement.

12. 지급보증서의 양도성

수출자 또는 대주은행은 수출채권 또는 대출채권의 양도 또는 유통화를 통해 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금지급보증서는 수출채권 또는 대출채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금지급보증서의 양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금지급보증서상 양도성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준거규칙 및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URDG 758(제33조), ISP 98(제6.02조), 및 유엔협약(제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증서에 양도가능이 명시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시 1)

We hereby agree that this Guarantee shall, upon a prior written notice to us, be assignable to and inure to the benefit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or corporation as if it were originally named herein.

예시 2)

The undersigned hereby agrees that this Letter of Guarantee and the undertakings hereunder shall be assignable in whole or in part to and shall enure to the benefit of any holder of the Notes as if each of them were originally named herein ; provided that upon each such assignment by you or by any other assignee, the assignor thereof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the undersigned of the name and address of any such assignee and the extent of the interest assigned to such assignee within ten (10) days of its taking place. The undersigned shall be entitled to treat any such assignee as the person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is Letter of Guarantee to the extent of his interest(as so notified to the undersigned) until the undersigned is notified of a further assignment.

예시 3)

The Guarantor hereby agrees that this Guarantee shall, upon a prior written notice to the Guarantor, be assignable to and inure to the benefit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as if it were originally named herein.

예시 4)

The rights of the Lender under this Guarantee shall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any assignee to whom the Lender assigns in whole or in part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예시 5)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f subrogation which a Guarantor may have arising at law, AAA Bank will assign, in any manner and terms required by that Guarantor, all of its rights in connection with any amount hereby guaranteed by that Guarantor and which is paid by that Guarantor to AAA Bank under this Guarantee which AAA Bank has under or in connection with the Loan Agreement and the other "Finance Documents" (as that expression is defined in the Loan Agreement).

13.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1) 준거법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등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의 결정에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정하여 분쟁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i)국제금융거래를 규율할 정도로 법이 잘 발달되어 있고 ii)법적 편파성이 없고 iii)집행이 편리해야 하고 iv)법률의 변경가능성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대금지급보증서를 포함한 국제금융계약에서 미국 뉴욕주법이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국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이 국제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을 존중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준거법을 인정하지만, 준거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그 준거법을 당사자가 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관할법원에서 준거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2) 재판관할권

재판관할권은 분쟁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말한다. 대금지급보증서를 포함한 국제금융계약에서는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주를 재판관할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로 정하는 것 보다는 임의관할(non-exclusive)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i)수익자가 원하는 국가에서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를 남기고, ii)특정국의 법원에 전속관할을 정하는 경우 일방이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일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금지급보증서를 포함한 국제금융계약은 통상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재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언어, 중재규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울러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양당사자를 구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1)

This Guarante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We irrevocably agree that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Guarantee may be brought in any Federal or State court sitting in the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such court in any action or proceeding.

예시 2)

This Letter of Guarante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The undersigned hereby irrevocably submits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예시 3)

This Guarante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Guarantor irrevocably agrees that any legal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Guarantee may be brought in any Federal or State court sitting in the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uarantor hereby irrevocably submits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such cour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예시 4)

9.1 This Guarante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France.

9.2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Guarantee including disputes concerning its validity, interpretation or performance shall be finally settled according to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three arbitrators appointed pursuant to these Rules.

The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Paris (France) and be conducted in English.

예시 5)

This Guarante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Norwegian law, and each Guarantor submits to the jurisdiction of the Norwegian Courts, with Oslo City Court as due venue.

14.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의 포기

주권국가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국의 재판관할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라고 한다.⁶¹⁾ 여기에는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 있는데, 전자는 국가는 절대적으로 재판을 면제받는다는 것이고, 후자는 사적 행위에는 재판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것이다.⁶²⁾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나 정부 기관이 대금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국가면제의 원칙은 소송 및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 이러한 지급보증인에 대하여 재판에 의한 이행청구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주권면제 항변을 포기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2)

The undersigned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is Letter of Guarantee is a commercial and not a public or governmental act and the undersigned is not entitled to claim immunity from legal proceeding with respect to itself or any of its properties or assets on the grounds of sovereignty or otherwise under any law. To the extent that the undersigned or any of its property or assets has or hereafter may acquire any right to immunity from set-off, legal proceedings, attachment prior to judgement, other attachment or execution of judgement on the grounds of sovereignty or otherwise, the undersigned for itself and its properties and other assets hereby irrevocably waives such right to immunity in respect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Letter of Guarantee.

61) 유흥석,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법학연구 제3집, 2009, p.444.

62) Explanatory Report on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ETS No. 074).

예시 4)

9.5 The Guarantor hereby waives any immunity from jurisdiction or execution to which it isor may be entitled, provided that the Guarantor does not waive any such immunity in respect of its assets which are (i) used by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f the Borrower's country, (ii) assets of a military character and under control of a military authority or defence agency, and (iii) located in the Borrower's country and dedicated to a public or governmental use (as distinguished from patrimonial assets dedicated to commercial use).

IV. 결 론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양당사자는 담보장치를 요구한다.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이행정보증서가 이용되고,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 외에 대금지급보증서가 이용된다. 대금지급보증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바, 그 명칭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대금지급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로 독립성, 추상성, 무조건성을 갖는다. 그러나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선적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통상 단순서면청구만 요구하며, 이점에서는 화환신용장 보다 담보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금지급보증서의 독립성, 추상성, 절대적 지급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성질이 모든 대금지급보증서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보증서에서 정한 지급청구의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⁶³⁾ 예를 들어 지급청구의 조건이 '절대적 지급청구(on first demand)'로 기재된 경우 수익자는 어떠한 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기본계약상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당한 지급청구의 문제를 초래한다. 한편, 지급청구의 조건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확인하는 법원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요구하

63) Roeland Bertrams, *op. cit.*, p.11.

는 경우에는 독립성, 절대적 지급성의 원칙은 훼손되며, 대금지급보증서의 담보가치는 약화된다. 대금지급보증서가 국제거래를 발전시키는 정당한 담보장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보증서의 각 주요 조항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지급청구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증기간(보증서 유효기간)과 지급청구시한에 대해서도 다툼이 될 수 있는 바, 우선 보증기간은 대금지급이 전액 이루어질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며, 보증기간을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지급청구의 시한에 대해 다툼이 될 수 있는 바, 지급청구의 시한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증인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인 경우 보증서에 국가면제를 포기하는 문안을 명시해야 그 보증서에 기해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보증서 문안 합의 시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여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 국제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상만,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2002.
- _____,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 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9권, 2008.
- _____, "산업설비 수출에서 금융조달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0권, 2011.
- _____, 국제거래법, 두남, 2011.
- _____, "플랜트수출에서 이행성보증서의 특성 및 실무적 유의점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집 제1호, 2013.
- 김선국, "보증신용장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박세운 · 한기문 · 김상만 · 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08.
-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7권, 2002.
-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LD조항)의 유효성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7권, 2002.
- 오원석 · 손명옥, "독립보증상의 수익자에 의한 부당청구(Unfair Calling)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2권, 2009.
- 유형석,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법학연구 제3집, 2009.
- 채진익, "은행보증제도에서 지급청구와 그 이행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대응)방안에 관한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6권제1호, 2011.
- 허해관,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지급", 무역상무연구 제51권, 2011.

Carole Murray, *Schmitth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1th ed., London Steven & Sons, 2010.

- E. Allan Farnsworth · Willaim F. Young · Carol Sanger, *Contracts(Cases and Materials)*, 6th ed., Foundation Press, 2001.
- Explanatory Report on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ETS No. 074).
- Georges Affaki,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CC, 2011.
- Kim, Sang Man, "A Comparative Study on a Supplier Credit and a Buyer Credi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Good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 48, 2010.
- Malcolm Stephens, *The Changing Role of Export Credit Agencies*, IMF Washington, 1999.
- Matti S. Kurkela, *Letters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2nd ed, Oxford Press, 2008.
- Philip Wood,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London Sweet & Maxwell, 1990.
- Ralph H. Folsom, Michael Wallace Gordon, John A. Spanogl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8th Ed, West Group, 2009.
- Richard Willsher, *Export Finance*, Macmillan Press 1995.
- Roeland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 Roy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510, 1995.
- Stephenson Harwood, *Shipping Finance*, 3rd Ed., Euromoney Institution Investor Plc, 2006.

ABSTRACT

A Study on Some Major Clauses of a Payment Guarante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Kim, Sang Man

While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a payment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for non-payment risk by a buyer(or a borrower in a loan agreement). A payment guarantee is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A guarantor accepts a credit risk of a principal which is normally a buyer in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A payment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The guarantor is only empowered to examine the beneficiary's demand and determine the payment on its face to the terms of the guarantee. A payment guarantee is thus different from a suretyshi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carries a significant advantages for a guarantor as well as for a beneficiary.

While a documentary credit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a typical payment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 In this respect payment guarantee can be a more secured facility than a documentary credit.

A payment guarantee normally comes into force from the issuing dat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shall be paid in full by a buyer(or a borrower) or by a guarantor. Although a guarantor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yment guarantee, a payment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

Key Words : Payment Guarantee, Independent Bank Guarantee,
Performance Type Guarantee, Independent Guarantee,
Demand Guarantee, Standby L/C